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6. 18.>

책무(제25조의3제2항 관련)

구분	책무
1.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가. 책무구조도의 마련·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나. 내부감사업무와 관련된 책무
	다.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라. 준법감시업무와 관련된 책무
	마.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책무
	바. 내부회계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사.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
	아.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 보호업무와 관련된 책무
	자.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지정 책임자가 수행하는 책무
	2. 금융영업 관련 책무
나. 예금 및 적금 업무와 관련된 책무	
다.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업무와 관련된 책무	
라. 내국환·외국환 업무와 관련된 책무	
마. 투자매매업무와 관련된 책무	
바. 투자중개업무와 관련된 책무	
사. 집합투자업무와 관련된 책무	
아. 투자자문업무와 관련된 책무	
자. 투자일임업무와 관련된 책무	
차. 신탁업무와 관련된 책무	
카. 보험상품 개발업무와 관련된 책무	
타. 보험계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파.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된 책무	
하. 보험계약 인수업무와 관련된 책무	
거. 보험계약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너.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책무	
더. 신용카드업무와 관련된 책무	
러. 시설대여업무와 관련된 책무	
머. 할부금융업무와 관련된 책무	

	버. 신기술사업금융업무와 관련된 책무
	서.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책무
	어. 혁신금융서비스업무와 관련된 책무
	저.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처. 연금(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된 책무
	커.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금융영업 관련 책무
3. 경영관리 관련 책무	가. 이사회 운영업무와 관련된 책무
	나. 인사업무와 관련된 책무
	다. 보수업무와 관련된 책무
	라. 고유자산 운용업무와 관련된 책무
	마. 건전성 및 재무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바. 공시업무와 관련된 책무
	사. 업무의 위탁 및 수탁 업무와 관련된 책무
	아. 광고업무와 관련된 책무
	자. 자회사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차. 영업점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카. 영업점 외 판매채널 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파.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경영관리 관련 책무

비고

1. "금융관계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을 말한다.
  - 가. 법
  - 나. 「상법」
  - 다. 「형법」
  - 라. 금융관계법령
  - 마.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법령
2.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3.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금융회사의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말한다.
4. "금융영업 관련 책무"란 금융회사가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이하 "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兼營)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말한다.

5. "경영관리 관련 책무"란 금융회사가 허가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말한다.

6. 금융회사는 위 표에 따른 책무를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에 맞게 세분하거나 병합하는 등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